

공공도서관 폐기도서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Effective Utilization of Discarded Books in Public Libraries

김 영 석 (Young-Seok Kim)*

〈 목 차 〉

I. 머리말	IV. 폐기도서 활용의 저해요인과 폐기도서 활용에 대한 사서의 인식 및 이해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V. 공공도서관 폐기도서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III.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폐기도서 활용 현황	VI. 맺음말

요약: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폐기도서 활용의 저해요인을 밝혀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단순히 재활용 폐지로 처리되고 있는 폐기도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문헌조사 및 현장 사례조사,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터뷰 방법은 대면이 10명,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이 12명이다. 전국 7개 광역시도의 18개 시군구에서 19개 공공도서관을 조사했는데, 교육청과 지자체 소속이 각각 6개관과 13개관이다. 22명의 사서를 인터뷰하였는데, 사서의 직위는 관장 6명, 팀장급 12명 그리고 기타 4명이다.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폐기도서 활용에 대한 인식과 폐기도서 무료배부와 공직선거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조사하였다. 폐기도서 활용의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요인은 공직선거법으로 밝혀졌다. 이에 본 연구는 폐기도서를 무료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조례 및 국가 법령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기도서의 폐기 원인에 따라 각기 다른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장서개발, 제적, 도서 폐기, 폐기도서 활용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that hinder the utilization of discarded books in public libraries, seek solutions, and suggest methods to effectively utilize discarded books. A literature review, field case study, and interview method were used. 19 public libraries in 7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cross the country were examined, and 22 librarians were interviewed. The librarian's awareness of the utilization of discarded books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 distribution of discarded books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factors hindering the use of discarded books,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found to be the biggest factor.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an efficient method of enacting local government ordinance and national laws to enable free distribution of discarded books. Different utilization methods are proposed depending on the cause of discarding books.

KEYWORDS: Public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Weeding, Book Discard, Utilization of Discarded Books

* 명지대학교 인문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yskim7@mju.ac.kr / ISNI 0000 0004 6502 7407)

• 논문접수: 2025년 2월 24일 • 최초심사: 2025년 3월 4일 • 게재확정: 2025년 3월 11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1), 1-26, 2025. <http://dx.doi.org/10.16981/kliss.56.1.202503.1>

* Copyright © 2025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도서관법은 도서관을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도서관 자료’는 단행본 도서와 같은 인쇄자료, e-Book과 같은 전자자료 그리고 점자자료와 같은 특수자료를 말한다.

도서관 자료 중에서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이 수집·정리·보존·제공하는 것은 단행본 도서(이하 도서)이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유익하고 가치 있는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구입, 기증, 교환 등을 통해 필요한 도서를 수집한다.

우리나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은 예산 중 자산취득비로 이뤄지기 때문에 구입한 도서를 함부로 제적·폐기할 수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한번 구입 및 수증되어 도서관 자산으로 등록된 도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도서관에서 관리·보존한다. 즉, 도서관의 자료열람실에서 이용시키고 이용이 저조하게 되면 보존 서고로 이동시켜 계속해서 보존·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개별 도서관의 장서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도서관 자료실의 서가 공간과 보존서고 공간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도서관의 장서량이 도서관의 자료열람실 그리고 보존서고의 자료 수장 한계치를 넘기면서 모든 도서를 더 이상 관내에서 관리·보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공립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년 전부터 공공도서관은 본격적으로 도서를 제적·폐기하기 시작하였고 점진적으로 많은 양의 도서를 제적·폐기하기에 이르렀다.

강재규 교수는 국내에서 연간 약 1,000만권 이상의 책들이 폐기되고 있고, 22년 기준 전국 1,238개 공공도서관에서 약 540만권이 폐기됐다고 주장한다(김명일, 2023). <표 1>과 같이 공공도서관의 도서 폐기량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폐기량은 63.6% 증가했고, 총 2,361만 여권이 폐기됐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매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많은 양의 도서를 폐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도서 폐기기준에 대한 규정은 잘 운영하고 있지만 폐기도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거나 직원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백 만권의 도서가 폐기되고 있고, 더욱이 많은 도서가 오·훼손 등의 이유가 아닌 보존서고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장·단기간 이용되지 않아 폐기되고 있다. 이것은 도서관이라는 매체가 갖는 본래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회적 자산의 손실이라 하겠다.

한편, 많은 도서가 폐기되는 상황에서 폐기도서의 적절한 활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24년 6월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이규서 의원은 당회 본회의에서 동대문구립도서관의 도서 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폐기도서 중 일부는 훼손됐거나 개정판 등이 나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장기미대출로 인한 폐기로, 폐기도서의 재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도, 2024).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3년 기준 1,267개관에서 560여만 권이 폐기되었다. 이 중 대부분은 지역주민에게 무상배부하거나 지역 단체 등에 기증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재활용 폐지로 처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처럼 단순히 재활용 폐지로 처리되고 있는 폐기도서를 그 가치를 되살려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폐기도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을 밝혀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 1〉 최근 5년간¹⁾ 공공도서관의 도서 증가 및 제적 책수 현황

연도	증가 책수(권수)		합계(권수) a	제적(권수) b	a/b(%)
	구입	기증			
2019	7,352,114	539,382	7,891,496	3,423,687	43.4
2020	7,040,615	859,918	7,900,533	4,261,241	53.9
2021	6,941,662	467,607	7,409,269	4,859,722	65.6
2022	6,866,953	458,463	7,325,416	5,467,323	74.6
2023	6,539,744	400,421	6,940,165	5,600,195	80.7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폐기도서를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 궁극적으로 폐기도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문헌조사, 현장 사례조사 그리고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폐기도서의 개념 정의, 공공도서관의 폐기도서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 마련, 도서관의 도서 폐기 및 활용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분석 그리고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폐기도서 활용 사례와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 폐기 및 폐기도서 활용 관련 규정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1) 2023년 기준 연면적이 3,000㎡ 이하인 공공도서관은 총 922개관이다. 이들 대부분은 2006년 이후 건립되었는데, 이들 도서관은 보존서고 없이 건립되었거나 그 공간이 협소하다. 이런 상태에서 도서관 개관이 10년 이상 지나면서 더 이상 많은 장서를 계속해서 관리 및 보존할 수 없게 되면서 많은 도서를 본격적으로 폐기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이 많은 양의 도서를 폐기한 최신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5년간의 통계를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폐기도서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6개국(국내 19곳, 미국 2곳, 캐나다 1곳, 영국 2곳, 독일 1곳, 일본 1곳) 총 26곳 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내 19곳 중 6곳은 연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13곳은 사서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해외 5개국 7곳 중 5곳은 인터넷을 통해 조사했고, 1곳은 이메일 그리고 1곳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다.

셋째, 공공도서관에서 매년 도서 폐기를 몇 회 하고, 폐기도서를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전국적으로 총 7개 광역시도의 18개 시군구에서 19개 공공도서관의 22명의 사서를 인터뷰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은 이 연구가 인터뷰 방법을 이용하고, 연구비용과 연구기간의 제한으로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지역을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지방(5개 광역자치도)으로 나누었고,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도서관의 선정은 교육청(6개관)과 지자체(13개관) 소속으로 나누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조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상세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장서폐기 경험이 있는 사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사서의 직위는 관장 6명, 팀장급 12명²⁾ 그리고 기타 4명이다. 인터뷰 방법은 대면이 10명,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이 12명이다. 서울 지역 인터뷰 대상자 12명 중 9명과 경기 지역 1명은 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나머지 서울 3명, 경기 3명, 지방 6명은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표 2> 사례조사 지역 및 도서관 수, 인터뷰 방법, 참여자 직위 및 수

사례조사 지역 및 도서관 수 인터뷰 참여자 수	인터뷰 참여자 직위 현황	인터뷰 방법 및 도서관 수
서울시: 9개관, 12명	관장: 6명	대면: 7개관 10명
경기도: 2개관, 4명	팀장(과장, 실장 포함): 12명	
강원도: 1개관, 1명		기타(주무관 등): 4명
전라도: 2개관, 2명		
경상도: 2개관, 2명		
제주도: 1개관, 1명		
7개 광역시도(18개 시군구), 19개관(교육청 6개관, 지자체 13개관), 22명	총 22명	총 19개관, 22명

인터뷰는 25년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고, 일부 내용에서 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하여 15~40분간 이루어졌다. 질문의 내용은 연 폐기 횟수, 폐기 절차, 폐기도서 처리 방법, 폐기도서 처리시 가장 어려운 점 등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사서들의 공공도서관의 폐기도서 활용에 대한 인식과 폐기도서 무료배부와 공직선거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2) 과장, 실장 포함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개념 정의

이 연구는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폐기도서 처리 및 활용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폐기도서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폐기도서에서 ‘폐기’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헌정보학용어사전(한국도서관협회, 2010)은 폐기를 ‘소장자료 중 오손 및 파손된 도서, 부적당한 도서 또는 이용되지 않는 도서를 장서에서 공식적으로 제거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용어 ‘폐기’와 짝을 이뤄 사용되는 것이 ‘제적’인데 동 사전은 제적을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동 사전에 의하면 폐기는 ‘특정 도서를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이고, 제적은 ‘특정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동 사전은 다시 ‘폐기도서’를 ‘도서관에서 도서가 빈번히 사용된 후 파손되어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내용의 이용가치가 저하되어 도서등록원부에서 제적·폐기하는 도서’로 정의하고 있다. 즉, 폐기도 특정 도서를 도서등록원부에서 제거하는 뜻으로 사용되어, 폐기와 제적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학자(윤희운, 2020; McGaw, 1956)에 따라서는 폐기와 제적을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조윤희(2011, 232)는 제적을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를 기록과 함께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 혹은 기록을 유지하면서 일반서가에서 보존서고로 이관하여 관리하는 과정 등 폐기의 전 단계를 수행하는 과정’이고, 폐기는 도서관 장서 기록에서 불필요한 자료 및 기록을 완전히 제거하여 해당 도서관에서 더 이상 자료로써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처리의 완전한 결과’라고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 관련 법령³⁾ 및 지자체의 도서관 운영 조례⁴⁾에서는 폐기와 제적을 특별히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폐기와 제적의 의미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윤희운(2020)은 ‘폐기(discard)는 어의상 또는 관용상 제적이거나 제가(除架, weeding, withdrawl, deselection)의 상의개념이라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폐기와 제적’, ‘폐기·제적’ 대신에 폐기를 사용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말하는 ‘폐기도서의 효과적인 활용’이라 함은 공공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근거해서 특정 도서를 행정적·공식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한 후에 해당 도서를 도서관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활용 폐지로 처리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도서관법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4) 가평군, 평택시, 과천시외의 도서관 운영 조례, 강진군의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2. 폐기도서의 효과적인 활용의 필요성

2023년 8월 ‘좋은 책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⁵⁾은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과 은퇴교수실에서 매년 1,000만권 이상의 책들이 폐기되고, 이런 책들이 헌책방이나 폐기물 수집상을 통해 재활용 폐지로 처리되는 등 지식자료가 아닌 단순 종이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이런 책들을 모아 새로운 독자를 만나게 하고, 좋은 책들을 보존하여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였다(도영진, 2023).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규서 의원도 폐기도서 재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도서관 등에서 폐기되는 책들이 단순히 재활용 폐지로 처리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이유는 폐기된 책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지식·정보매체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윤희윤(2020, 114)은 ‘책은 인류의 삶, 지식 세계, 문명과 문화, 정신과 기억이 집적된 매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책은 인류 문명사에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매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더 많은 사람이 널리 읽고 활용하도록 하였다. 책은 그것이 훼손·오손되어 더 이상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읽히고 이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책은 비록 한 사람에게 외면받고 관심을 받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책이 도서관에서 폐기됐다 하더라도 재활용 폐지로 처리되기 전까지 최대한 그 가치를 되살려 활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년 수많은 책이 폐기되는 상황에서 그 책들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3. 선행연구 분석

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기 위해 도서폐기, 자료폐기, 장서폐기, 폐기도서를 검색어로 사용해 RISS 등 주요 학술정보서비스(사이트)에서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를 검색하였고, 총 23건이 검색되었다. 이 중 학교도서관과 전문도서관 관련이 각각 6건과 1건, 대학도서관 관련이 8건, 공공도서관 관련이 4건 그리고 관종을 특정하지 않은 연구가 4건이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그동안 공공도서관의 장서폐기 연구가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비해 활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3건의 연구 유형을 살펴보면, 석사학위논문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준학술논문⁶⁾이 7건

5) 경상남도 내 전·현직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단체

6)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 논문

그리고 학술논문은 3건에 불과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완료된다면 장서폐기 분야, 그중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장서폐기 분야의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도서폐기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연구와 연관된 23건의 연구 중 먼저 학교도서관과 전문도서관에 초점을 둔 7건의 연구 모두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 연구가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 환경과 크게 다른 관중인 학교 및 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도서관에 초점을 둔 연구 8건의 경우 폐기도서 처리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 2건의 연구는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고, 그렇지 않은 학위논문 2건과 준학술 논문 4건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장서폐기 관련 연구 4건과 일반 장서폐기 주제 연구 4건 그리고 대학도서관 장서폐기에 대한 학술연구 2건 등 총 10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 관중이 아닌 전 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서폐기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은철(2000)은 전 관중에 걸쳐 장서폐기의 당위성, 저해요인, 방법, 시기 등에 대해 고찰하면서 도서관에서 장서폐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은철은 본 연구의 주제에 해당되는 폐기자료의 처리방안으로 파기, 기증, 교환, 판매, 보존공간에 별치 등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마선희(2000)는 도서관의 장서폐기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송파시립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장서폐기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서관의 장서폐기 기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선희는 폐기자료의 적절한 처리방안으로 여섯 가지 즉, 파기, 기증, 교환, 판매, 보존서고에 보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다른 매체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김진환 외(2010)도 특정 관중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도서관의 장서폐기의 필요성과 저해요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폐기도서의 처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강미희(2003)는 국내 134개 대학, 공공, 전문·특수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료보존 및 장서폐기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도서관의 자료소장공간의 적체현상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공동보존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 자료공동보존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자료공동보존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제인 폐기도서의 처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와 다르게 공공도서관이 아닌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에 대해 연구했지만 폐기도서의 처리에 대해 다른 두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김미혜와 이상용(2011)은 해외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 지침 및 그 사례를 살펴보고, 장서폐기 경험이 있는 국내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장서폐기 운영 및 지침 현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학도서관 장서폐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에 참여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폐기자료 처리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를 소개했는데 14개 대학도서관이 기증한다고 했고, 판매한다고 응답한 곳도 6곳이나 되었다.

이용민과 이지연(2021)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단행본 장서폐기와 관련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서폐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폐기 현황을 분석하고, 사서 면담을 통해 대학도서관 장서폐기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부분적으로 대학도서관의 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과 사서의 폐기 단행본의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의 장서폐기 주제를 다룬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수진(2004)은 서울과 전라북도 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58명을 대상으로 장서폐기의 필요성, 방법과 절차, 문제점 등에 대해서 조사·분석하였고, 회원으로 등록한 이용자 171명을 대상으로 장서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폐기장서 처리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재활용을 위한 폐지 처분(52.6%)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타 기관에 기증(44.7%)이 높았다. 소각 등의 완전 파기는 2.6%에 불과했고, 자료교환과 보존서고에 별도보관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순(2006)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169명을 대상으로 자료폐기에 대한 인식조사, 법적근거, 자료폐기 절차 및 방법, 자료폐기 기준 등 자료폐기 전반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폐기자료의 처리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파기(26.6%)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기증(23%), 판매(16.7%), 이관(자료공동보존소)(13.3%), 관리전환(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윤희(2011)는 서울시 자치구 공공도서관 중 개관연도와 규모를 기준으로 5개 도서관을 선정하고, 이들 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서폐기 기준, 시행주기, 폐기장서 처리 방법 등 장서폐기 전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조사대상 도서관의 가장 일반적인 폐기도서 처리 방법은 기증, 파기, 판매 등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희환(2015)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장서폐기의 문제점, 장서폐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폐기기준, 폐기장서 처리방법 등 장서폐기 전반에 대해 연구하였다. 폐기장서 처리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폐지로 매각(34.3%)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기증(24.4%), 자료공동보존서고로 이동(17.4%), 관리전환(11.9%)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판매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장서폐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거의 모두 장서폐기 전반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연구 즉, 장서폐기의 필요성 및 저해요인, 기준 및 규정, 방법과 절차, 폐기자료 선정 및 처리방안 등을 폭넓게 다루면서 최종적으로 장서폐기 업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장서폐기 전체 업무 중 폐기자료 처리 및 활용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고, 연구 범위가 폐기도서 처리 및 활용에 한정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폐기도서의 적절한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 연구의 성격도 띠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도서관의 폐기도서 활용에 대한 본 연구는 폐기도서 처리 및 활용에 대한 사서와 이용자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향후 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 그리고 현장 업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Ⅲ.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폐기도서 활용 현황

문헌 및 현장 사례조사를 통해 폐기도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내외 사례를 발견하였다. 먼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해외 공공도서관의 폐기도서 활용 사례

미국 노스다코다(North Dakota) 주립도서관은 폐기도서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 즉, 돈을 받고 팔거나, 도서관 자체 책 판매 행사를 개최하거나, 책을 미술용품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노스다코다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폐기된 도서를 활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은 여러 온라인 판매 업체에 책을 판매하는 것이다.

〈표 3〉 노스다코다 주립도서관이 거래하는 온라인 중고책 판매 업체

Amazon, Better World Books, ThriftBooks, Baker & Taylor's Sustainable Shelves Programs, AbeBooks, Alibris, Biblio, Discover Books, eBay, Paper Back Swap.

버팔로 및 에리군에 속하는 오로라타운도서관은 2024년 5월 3일부터 24일까지 폐기된 책, 영화 DVD, CD를 판매했다. 판매가격은 날짜에 따라 달랐다. 워딩톤 도서관들⁷⁾은 '워딩톤 도서관의 친구'(Friends Foundation of Worthington Libraries)를 통해 연중 수시로 도서관 로비에서 폐기된 책과 기증받은 책을 1~2달러에 판매한다.

캐나다의 노스밴쿠버시립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에 폐기자료의 처리 방안의 하나로 판매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연 2회 개최되는 책판매 행사에서 폐기자료를 판매하고 있다.

한편, 위의 워딩톤 도서관 사례처럼 미국과 캐나다⁸⁾의 경우 일부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친구에게 폐기도서를 전달하고 이 단체가 책을 판매하여 그 수입금으로 새책을 구입하여 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버밍엄의 에딩톤도서관은 24년 7월과 10월 그리고 25년 1월 25일(토) 오전 10~12시, 오후 2~4시에 각각 100여 권의 폐기(discarded)도서를 도서관에서 판매했다. 울버햄튼시는 2019년 5월 1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당해 시의 16개 도서관이 폐기도서를 시청 앞 광장에서 판매했다.

포츠머스도서관의 폐기도서 처리방식은 도서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첫째, 상태가 좋지 않으면

7) Old Worthington Library, Northwest Library

8) Friends of the London Public Library

폐지로 처리한다. 둘째, 분관이 많아 한 분관의 폐기도서를 수요가 있는 다른 분관으로 이관한다. 셋째, 대출이 활발하지 않고 유행이 지났지만 상태가 양호한 책은 도서관 자체 책 판매를 위해 따로 관리한다. 넷째, 비소설 분야 폐기도서의 경우 아마존의 Marketplace⁹⁾에서 판매한다.

독일 드레스덴도서관¹⁰⁾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폐기도서를 처리 및 활용하고 있다. 첫째, 도서관 이용자에게만 ‘매우 저렴한 가격(very low price)’으로 판매하고 이용자 외에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 둘째, 학교나 비영리기관에 기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양은 대체로 많지 않은데, 첫째나 셋째 방법보다 그 양이 적다. 셋째, 재활용 폐지로 처리하고 있다. 독일 사서에 의하면 독일의 다른 일부 공공도서관은 전문 판매상에 판매하기도 한다. 한편, 대부분의 독일 공공도서관은 드레스덴 도서관과 같은 방식으로 폐기도서를 처리 및 활용하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시 하카타도서관은 제적도서를 도서관 출입게이트 옆의 플라스틱 상자에 담고 무료배부 안내를 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도서관은 책 뒷표지에 ‘제적도서’ 스티커를 붙이고, 바코드 스티커와 북레이블을 제거한 상태로 이용자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도서관 직원에 의하면 당해 도서관은 제적도서를 판매하지 않지만, 일본의 다른 도서관 중에는 판매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¹¹⁾

2. 국내 공공도서관의 폐기도서 활용 사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중에도 폐기도서를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소속의 무안도서관과 목포도서관은 폐기도서를 지역의 기관 및 단체에 우선 기증하고 그 다음으로 개인에게 무료배부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목포도서관은 폐기도서의 29%를 활용하였다. 한편, 경기도 용인시립도서관은 무안도서관과 목포도서관보다 더 적극적으로 폐기도서를 활용하고 있는데, 폐기도서를 시민들에게 무료배부가 아닌 유료 판매를 하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교육청무안도서관(이하 무안도서관)은 폐기도서 재활용을 위해 ‘헌책 나눔 행사’를 2020년과 2022년에 개최하였다. 무안도서관은 동 행사를 통해 지역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헌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해당 도서관이 헌책 나눔 행사에 사용한 도서는 ‘도서관 장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료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판의 변화와 법규의 개정, 기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및 파·오손된 자료’(김두연, 2022)이다.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이하 목포도서관)도 2023년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도서 무료 나눔’

9) Marketplace은 제3자가 판매를 위해 자신의 물품을 올릴 수 있는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10) 연구자의 질의에 드레스덴 공공도서관 사서가 2025년 1월 17일에 이메일로 답변한 내용임.

11) 연구자가 2025년 2월 15일 하카타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음.

행사를 개최했다. 목포도서관은 ‘매년 발생하는 폐기도서의 재활용과 지역 사회의 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동 행사를 도서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하였다.¹²⁾ 동 행사에 사용된 도서는 ‘오·훼손된 및 출판연도가 오래된 도서 등 불용 결정된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것’들이다. 더불어 동 행사를 통해 지역 복지센터 및 단체에 1,300여권을 기증하였으며, 지역민 551명에게 5,838권의 책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목포도서관의 전체 불용도서 24,056권의 29.7%에 해당한다.¹³⁾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무안도서관과 목포도서관이 2020년, 2022년, 2023년에 각각 개최한 ‘폐기도서 나눔 행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4년 12월 26일에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¹⁴⁾를 새로 제정[및 시행 2024. 12. 26.]하면서 <표 4>와 같이 동 조례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①도서관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표 4>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p>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2.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p>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p>

한편, 용인시의 경우는 위의 무안도서관과 목포도서관의 사례와 조금 다르다. 용인시립도서관은 위의 두 도서관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폐기도서를 활용하고 있다. 용인도서관은 2023년 9월에 개최된 제5회 용인 북페스티벌과 2024년 10월에 개최된 제6회 용인 북페스티벌에서 행사의 일환으로 제적도서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유료로 판매했다. 용인도서관은 북페스티벌에서 제적 도서 5,000여권¹⁵⁾을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권당 1,000원에 현금으로 판매했다. 한편, 이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한 사서는 제적도서 유료 판매 행사는 시민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고 하였다. 이 사실은 김희환(2015, 51)의 주장, ‘요사이 국민 수준이 높아 오래된 책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도 관심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귀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와 매우 상반된다.

결론적으로 김희환의 주장처럼 사람들이 오래된 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내 많은

12) 전라남도교육청 보도자료(2023.2.20)

13) 전라남도교육청 보도자료(2023.2.20)

14) 전라남도조례 제6189호

15) 판매를 위해 준비한 제적도서에는 책등 하단에 용케리터가 인쇄된 레이블(label)-책을 사랑하는 당신이 조아용-을 붙여서 판매했다.

공공도서관이 판매는 물론이고 무상배부나 기증도 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용인시는 폐기도서를 판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용인시의 이러한 정책 추진은 매우 적극적인 행정이고,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새로운 방식의 폐기도서 활용 사례라고 하겠다.

한편, 용인시의 경우 도서관의 '제적 도서 유료 판매 행위'의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조례가 아닌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인시의회는 1996년 최초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9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회에 걸쳐 일부 개정(전부개정 포함)하였다. <표 5>와 같이 2023년 12월 8일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제13조(도서관자료 제적) ②항에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한 도서관자료를 개인에게 중고서적 거래가격을 참고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에 개최한 제6회 '용인 북페스티벌'부터는 공직선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에게 제적 도서를 유료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표 5>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도서관자료 제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를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3, 2022. 11. 11, 2023. 12. 8>
1. ~ 4.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한 도서관자료를 개인에게 중고서적 거래가격을 참고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3,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19. 1. 10]

한편, 의왕시와 평택시는 앞의 사례와 조금 다르다. 의왕시에서는 그동안 공립작은도서관에서만 폐기된 도서를 개인에게 무료배부해왔고, 공공도서관에서는 정기간행물 과월호만 개인에게 무료배부해 왔다. 그런데 2025년 올해 처음으로 폐기도서를 개인에게 무료배부할 계획이다.

의왕시는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서관 자료 폐기 및 제적에 한정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것과 다르게 당해 지자체의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 폐기도서의 무상 배포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폐기도서의 무상 배포가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의왕시는 2022년 12월에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시행 2022. 12. 30.]'를 개정하면서 동 조례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③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평택시는 폐기도서를 개인에게는 무료배부하지 않고 사립작은도서관과 청소년 단체 등 지역의 기관 및 단체에는 기증을 한다. 한편, 수증된 도서의 경우는 사전에 기증자의 동의를 구해 축제 등에서 개인에게 무료배부하고 있다.

평택시는 앞의 의왕시와 같이 당해 시의 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자료를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평택시는 <표 6>과 같이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시행

2023. 9. 25.]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제4항에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폐기도서를 지역주민에게 무료 배포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폐기도서를 개인에게 무상 배포하지는 않고 있다.

〈표 6〉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중 폐기자료 무상 배포 관련 내용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④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제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④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IV. 폐기도서 활용의 저해요인과 폐기도서 활용에 대한 사서의 인식 및 이해

공공도서관에서 자관 폐기도서를 활용하는데 어떤 저해요인이 있고, 사서들은 폐기도서 활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폐기도서 활용과 공직선거법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1. 폐기도서 활용의 저해요인

도서관에서 자관 폐기도서를 활용할 때 어떤 저해요인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사서들이 언급한 저해요인은 다음과 같이 크게 8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즉, 폐기도서를 지역주민에게 무료배부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요인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폐기도서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22명의 사서 중 68.2%에 해당하는 15명이 공공도서관이 지역민에게 폐기도서를 무료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도서관의 자료 무료배부 및 기증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가 2014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올라왔다.¹⁶⁾

둘째, 무료배부된 폐기도서의 재유통이다. 즉, 과거에 도서관에서 무료배부된 폐기도서가 중고서점에서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서 사서들이 업무를 잘 못 수행한 것으로 비춰져 곤욕을 겪었다고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간, 인터넷 질의.

했다. 김희환(2015, 50)도 이점을 염려했다. ‘폐기장서들이 시중에 나돌아다니면 일반 국민들은 도서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책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셋째, 폐기도서 처리 및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없음이다. 현재 도서관 현장에는 폐기도서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있지만 폐기도서 처리 및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지역 서점, 출판계, 작가가 도서관의 폐기도서 판매를 문제 제기함이다. 공공대출보상권¹⁷⁾의 문제처럼 도서관의 중고책 판매가 출판사와 작가의 책 판매 수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서관의 책 판매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였다.

다섯째, 폐기도서 중에는 훼손·오손 도서가 많아 근본적으로 활용이 불가하다.

여섯째, 폐기도서 중에는 내용의 오류,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를 담고 있는 도서가 많아 정보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

일곱째, 폐기도서의 배부처가 없음이다. 최근 들어 폐기도서를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거의 없다. 과거에는 군부대, 작은도서관, 심지어 학교도서관에서도 폐기도서를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여덟째, 사서의 업무가 추가되거나 과중 될 수 있음이다. 폐기도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서에 부착된 각종 장비 즉, 복레이블, 바코드 스티커, RFID칩 등을 제거해야 하고, 더불어 재판매금지 스티커, ‘폐기도서’ 도장 등을 찍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현재의 업무에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희환(2015, 50)도 다음과 같이 사서의 업무 가중을 우려했다. ‘장서를 폐기할 때는 법률적, 행정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폐기장서에 등록번호와 등록일자가 기록된 고무인, 도서관명 또는 기관명이 찍힌 축인 등을 제거하고 교환, 기증, 염가판매 해야 하나,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

2. 폐기도서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인식

연구에 참여한 사서들은 도서관의 폐기도서 활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표 7>과 같이 22명 중 9명은 ‘필요하다’고 하였고, 5명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4명은 ‘불필요하다’고 하였고, 4명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 참여자의 63.6%(14명)가 폐기도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평균값은 3.68로 4 이하로 나타나 폐기도서 활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7) 도서관의 열람이나 대출서비스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판매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표 7〉 사서의 폐기도서 활용의 필요성 대한 인식(N=22)

구 분	매우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폐기도서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0(0.0)	4(18.2)	4(18.2)	9(40.9)	5(22.7)	3.68

3. 폐기도서 무상배부 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서 이해

지자체 도서관의 운영회의에서 도서 폐기를 심의할 때 종종 운영위원들이 폐기도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는데, 그때마다 사서들은 폐기도서를 시민들에게 무료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대답하곤 하였다.¹⁸⁾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도서관이 각종 행사에서 정기간행물의 과월호나 폐기도서를 지역주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거라고 답변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 또는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시립·구립도서관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과월도서를 제공하는 것은** 시기에 상관없이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2. 6.)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폐기도서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11. 7.)

한편,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간행물 과월호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수증한 도서도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에게 무료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주간) 행사를 개최하면서 법령(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교육청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과월호 잡지와 기증도서를 무료로 배부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3. 26.)

18) 본 연구자가 참석한 몇몇 도서관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있었던 사실에 근거함.

이상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이 지역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폐기도서, 간행물 과월호, 또는 수증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시기에 관계 없이 상시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서관의 폐기도서나 정기간행물 과월호 또는 수증도서의 무료배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거라고 답변했을 때 언급한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제114조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4조 내용

<p>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p> <p>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p>

<표 9> 폐기도서 무료배부와 공직선거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N=22)

구 분	매우 잘 모름	잘 모름	보통이다	잘 앎	매우 잘 앎	평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이해	1(4.6)	3(13.6)	3(13.6)	12(54.6)	3(13.6)	3.59
공직선거법 위반 아님 이해	5(22.7)	6(27.3)	5(22.7)	5(22.7)	1(4.6)	2.59

본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폐기도서를 무료배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표 9>와 같이 12명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3명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총 22명 중 15명(68.2%)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르고 있는 사서는 4명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대체로 사서들은 지역주민을 위한 폐기도서 무료 나눔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평균값은 3.59로 4 이하로 나타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4. 공직선거법 위반 없는 폐기도서 무료배부 행위에 대한 사서 이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도서관이 폐기도서나 간행물 과월호, 또는 수증도서를 지역주민에게 무료배부하는 것은 상시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법령에 근거하거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당해 조례에 근거해서 폐기도서를 배부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몇몇 지자체는 폐기도서 무료배부와 관련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도서 무료배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폐기도서 무료 나눔 행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폐기도서를 활용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동 청은 당해 관청에 소속된 7개 공공도서관을 위해 2023년 11월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전라북도 조례 제5391호]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대상), 제3조(용어정의) 세부 내용 생략</p> <p>제4조(심의 및 처리)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은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p> <p>제5조(폐기 및 제적 기준과 범위) ①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 훼손, 파손 또는 오손 •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 •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 세부 내용 생략</p> <p>제6조(폐기 시기) 세부 내용 생략</p> <p>제7조(폐기자료 처리) ① 폐기자료 중 재활용 가능한 자료는 개인이나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 기증할 경우,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개인들이 폐기도서 배부 등록부에 서명하여 도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체에 기증할 경우에는 도서목록 게시를 통하여 신청서[별지]를 접수받아 처리 후 기증 처리한다. • 학교도서관은 ... (이하 생략). ② 재활용할 수 없는 자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매각 및 폐기한다. ③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자료의 폐기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의 관장(학교장)이 정한다. 부칙. 세부 내용 생략</p>
--

이 조례는 우리나라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표 10>과 같이 7개 조항과 부칙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례 제7조는 도서관의 '폐기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례 제7조는 폐기자료는 개인이나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7개 도서관은 위의 조례에 근거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관내 지역주민에게 폐기도서를 무료배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폐기도서를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표 9>와 같이 총 22명 중 6명은 '잘 모른다', 5명은 '매우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총 11명(50%)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잘 알고 있다'(매우 잘 앎 포함)는 사서는 6명(27.3%)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평균값은 2.59로 나타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무료 책 나눔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V. 공공도서관 폐기도서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1. 공공도서관 폐기도서 활용의 저해요인 극복

위의 '4.1 폐기도서 활용의 저해요인'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도서관이 폐기도서를 지역주민에게 무료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해요인은 크게 8가지이다. 이중 다섯째에서 여덟째에 해당하는 저해요인 즉, '폐기도서 중에는 휘·오손 도서가 많아 근본적으로 활용이 불가함', '폐기도서 중에는 내용의 오류,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많아 정보자료의 가치가 없음', '폐기도서의 배부처가 없음', '사서의 업무가 추가되거나 과중 될 수 있음'과 같은 문제는 그 자체로 문제가 바로 해결되거나 도서관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즉, 여덟째 저해요인인 '사서의 업무가 추가되거나 과중 될 수 있음'의 경우 모든 폐기도서를 무료배부하거나 기증 혹은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선별된 것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업무가 크게 가중되지 않고 도서관 자체의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폐기업무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연 1회 수행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일시적으로만 업무가 가중되어 추가 인력 투입 없이도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첫째부터 넷째에 해당하는 어려움은 도서관이 타기관, 단체, 사람들과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판단된다. 먼저, 첫째 요인이며, 가장 큰 저해요인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결방안은 그 내용이 다소 길고 복잡하여 별도로 아래 5.2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둘째 저해요인인 '무료배부된 폐기도서의 재유통'의 문제는 용인시의 사례처럼 폐기도서에 '폐기 도서' 및 '재판매 금지' 도장을 찍거나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저해요인인 '폐기도서 처리 및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없는 것'은 첫째 저해요인의 제거 과정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즉, 지자체가 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도서 처리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겠다. 또한 도서관 자체적으로 장서개발정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을 수립할 때 폐기자료 선정지침에 폐기도서 처리 및 활용에 대한 규정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저해요인은 지역 서점, 출판계, 작가가 도서관의 폐기도서 판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즉, 이들 단체가 도서관의 폐기도서 판매가 자신들의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는 개별 지자체나 도서관이 아닌 한국도서관협회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협회가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도서관의 폐기도서 판매는 국민들의 책과 독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국민독서진흥을 제고하는 활동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이들 단체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도서관협회는 2022년에 비슷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적이 있다. 즉, 작가와 저작자 단체 및 출판계와 도서관계 간에 공공대출보상권(PLR: Public Lending Right)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서관계를 대표해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2022).

2. 공직선거법 위반 없는 폐기도서 활용을 위한 조례 및 법령 제정 방안

위의 '4.1 폐기도서 활용의 저해요인'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의 사서 인터뷰 결과 공공도서관이 폐기도서를 활용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으로 밝혀졌다. 위의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사서 중 68.2%는 공공도서관이 폐기도서를 지역주민에게 무료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도서관이 폐기도서, 정기간행물 과월호, 수증도서를 지역주민에게 무료배부하는 행위를 상시적인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공직선거법에 구애되지 않으면서 폐기도서를 지역주민에게 무료배부 및 유료판매 그리고 지역의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조례 및 국가 법령 제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조례 제정 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조례를 완전히 새롭게 제정하는 방안으로 <표 4>, <표 10>과 같은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북

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례가 있다. 둘째는 현재의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용인시, 의왕시, 평택시, 홍천군의 사례가 있다.

그런데 두 방안 모두 조례를 제정할 때 중요한 것은 조례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조례에 넣을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아래 <표 11>의 홍천군 조례 제11조와 같이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조항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세부 항목을 신설한다. 둘째, 관련 조항의 세부 내용을 만들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한다. ① 자료의 범위로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할지를 결정한다. 즉, 단행본 도서로 한정할지 아니면 정기간행물 과월호나 DVD 같은 비도서 자료도 포함할지를 결정한다. ② 활용의 범위 및 방법으로 폐기자료를 언제, 어떻게 활용하지 그 시기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즉, 언제 혹은 어떤 행사 때 그리고 무상배부 혹은 유료판매 혹은 기증을 할 것인지를 명시한다. ③ 무상배부 및 유료판매의 대상을 누구로 할지를 명시한다.

<표 11>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중 자료 무상배부 관련 내용

<p>제10조(기증자료) ① 군수는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자료관리 시스템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대출 및 열람하게 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및 관련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도서관 행사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 배부 할 수 있다.</p> <p>제11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4. 세부 내용 생략</p> <p>5. 자료 중 과년도 비도서자료, DVD 영상물, 잡지 등은 도서관 행사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 배부할 수 있다.</p> <p>6. 세부 내용 생략</p> <p>③ 세부 내용 생략</p>
--

한편, 홍천군은 <표 11>과 같이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시행 2024. 5. 31.] 제10조(기증자료) 제2항에 '기증자료 무상배부' 그리고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5항 5에 과년도 비도서자료, DVD영상물, 잡지 등 무상배부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는데, 무상배부 가능한 자료에 단행본 도서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단행본 폐기도서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서는 무상배부 가능한 자료 리스트에 반드시 도서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국가가 법령을 제정하거나 중앙부처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앞의 지자체 조례 제정 방안처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폐기자료의 활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번거롭고 행정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즉,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넣어 시행한다면 개별 지자체는 별도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 모든 도서관에 적용되는 ‘도서관이 연간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자료의 양에 대한 지침이 도서관법시행령의 [별표 7]에 명시되어 있다. 이 [별표 7]에 폐기도서의 처리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현재 [별표 7]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는 그 세부사항이 4호까지 있다. 여기서 현재 4호의 사항을 5호로 내리고 4호에 ‘폐기 및 제적도서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한다. 세부사항으로는 용인시 사례처럼 ‘제적한 도서관 자료를 개인에게 중고서적 거래가격을 참고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거나, 평택시처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폐기도서의 폐기 원인에 따른 활용 방안 제안

폐기도서는 도서가 어떻게 폐기됐는지 그 원인에 근거해서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폐기된 도서가 도서의 내용, 물리적 상태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폐기됐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서관 현장에서 적용하는 도서의 폐기기준 즉, 폐기 원인의 구분 및 세분화는 도서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A도서관은 폐기원인을 ‘불용’, ‘분실’, ‘파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 원인을 이유로 도서를 폐기한다.¹⁹⁾ 반면에 다른 B도서관은 2023년에는 ‘미반납’, ‘불효용 및 파손’, ‘장서점검 미확인’, ‘분실도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고, 2024년에는 조금 다르게 ‘장기연체’, ‘불효용 및 파손’, ‘분실도서’, ‘○○대 폐지 교과목 및 사용중단’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다.²⁰⁾ B도서관의 경우 ‘불용과 파손’을 하나의 원인으로 묶고, 매년 조금씩 다른 원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김주영 외(2010, 69)는 공공도서관의 자료 폐기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아홉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첫째, 이용가치 상실, 둘째, 내용상 문제 있음, 셋째, 복본 및 내용이 중복됨, 넷째, 역사적 연구나 판 간의 비교 목적이 아닌 자료로서, 개정판이 있음, 다섯째, 파·오손돼서 보수가 불가능함, 여섯째, 망실, 일곱째, 전집이나 시리즈의 일부로써 독자적으로 이용 또는 소장이 무의미함, 여덟째, 회수 불능 및 소재 미확인, 아홉째, 시류에 편승한 단명자료이다. 반면에 도서관의 규모가 다소 큰 서울대표도서관은 자료 폐기의 기준을 <표 12>와 같이 1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문헌조사 결과 이 구분이 가장 세분화 된 기준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표도서관의 폐기기준을 근거로 삼아 각각의 원인에 따른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19) A도서관(본 연구의 조사대상 도서관 중 하나)의 2022년~2024년 자료 폐기 심의 목록.

20) B도서관(본 연구의 조사대상 도서관 중 다른 하나)의 2023년, 2024년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자료.

〈표 12〉 폐기 원인에 따른 활용방안 제안

구분	폐기 원인	활용방안					
		기관 단체 기증	개인 배부	개인 교환	개인 판매	창작 활동 활용 ²¹⁾	폐지로 매각
1	이용가치 상실(불용) ²²⁾	○	○	○	○	○	○
2	복본 또는 내용 중복	○	○	○	○	○	○
3	개정판 발간	.	○	○	.	○	○
4	전집, 총서에서 일부가 빠진 결본	○	○	○	○	○	○
5	훼손, 파손, 오손	활용 불가		△*		○	
6	(단기)보존기간 만료	○	○	○	○	○	○
7	대체 가능 자료 확보	○	○	○	○	○	○
8	시사성 결여로 가치 상실	.	○	○	.	○	○
9	희소성 없는 자료	.	○	○	.	○	○
10	맞춤법이 맞지 않는 자료	.	○	○	.	○	○
11	20년 지난 자료 중 계속 보존 불필요한 자료	.	○	○	.	○	○
12	미회수된 자료	활용 불가					
13	장서점검 중 미확인	활용 불가					

* 폐기도서 상태에 따라서 창작 활동에 활용 고려

폐기도서의 활용 및 최종 처리 방법은 폐기 원인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기관·단체 기증, 개인 무료배부, 개인 유료 판매, 개인 교환, 영리회사 판매, 공동보존소 이관, 예술창작 활동에 활용, 폐지로 매각 등이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영리회사 판매’ 방법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공동보존소 이관은 공동보존소의 건립·운영과 같은 제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활용방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기관·단체 기증, 개인 무료배부, 개인 유료 판매, 개인 교환, 예술창작 활동에 활용, 폐지로 매각 방안을 서울대표도서관의 폐기기준과 연계해 〈표 12〉와 같이 폐기 원인별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단체 기증’ 및 ‘개인판매’를 고려할 수 있는 폐기도서는 이용가치 상실, 복본 및 내용 중복, 전집, 총서에서 일부가 빠진 결본, (단기)보존기관 만료, 대체 가능 자료가 확보된 도서 등이다. 둘째, ‘개인 배부 및 교환’을 고려할 수 있는 폐기도서는 훼손, 파손, 오손된 도서와 미회수된 도서, 장서점검 중 미확인 된 자료를 제외하고 모든 도서가 해당된다. 셋째, ‘창작활동 활용’을 고려할 수 있는 폐기도서는 미회수된 자료와 장서점검 중 미확인된 자료를 제외하고 모든 도서와 훼손, 파손, 오손된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이다. 마지막으로 미회수된 자료, 장서점검 중 미확인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폐지로 매각이 가능하다.

21) 폐기도서를 활용하여 각종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을 말함.

22) 개정판이 나온 구판 자료, 내용이 너무 오래돼 현실과 맞지 않는 자료, 현재의 교과과정과 맞지 않는 자료, 주제분 야에 따라 발행되지 5~10년 이상된 자료, 도서관에 따라 5~10년 동안 한 번도 대출되지 않은 자료 등을 말한다.

VI. 맺음말

최근 들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증가한 장서를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공간이 부족하여 도서 폐기량이 크게 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폐기량이 63.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총 2,361만 여권이 폐기됐다. 그렇지만 이렇게 폐기된 많은 도서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재활용 폐지로 처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매체로써 도서가 가지는 본래의 가치를 되살려 폐기도서가 단순히 재활용 폐지가 아닌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현장 사례 조사,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조사는 전국적으로 총 7개 광역시도의 19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했고, 이들 도서관에 근무하는 총 22명의 사서를 대면 및 전화로 인터뷰하였다. 또한 문헌조사 및 사서 인터뷰를 통해 국내외 26개 공공도서관의 폐기도서 처리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 공공도서관은 폐기도서를 도서관 내에서, 인터넷 서점과 같은 영리회사를 통해 그리고 도서관의 친구를 통해 판매함으로써 폐기도서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부 지자체 공공도서관은 폐기도서를 지역주민에게 무료배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매년 지자체의 책 축제에서 수천 권의 폐기도서를 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폐기도서 활용에 대한 사서의 인식(5점 척도 평균값 3.68)은 매우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도서 무료배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5점 척도 평균값이 3.59로 매우 높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없는 폐기도서 무상 배부에 대한 이해는 5점 척도 평균값이 2.59로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도서 활용방안은 도서의 폐기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제안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대표 도서관의 폐기기준에 따라 기관·단체 기증, 개인 무료배부, 개인 유료 판매, 개인 교환, 예술창작 활동에 활용, 폐지로 매각 방안을 각각 제안하였다.

조사 결과 공공도서관의 폐기도서 활용의 저해요인은 8가지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폐기도서 무료배부를 허용하는 규정이 포함되도록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였고, 일부는 새롭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폐기도서를 지역주민에게 무료배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관련 법령 제정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례처럼 도서의 제적 및 폐기에 한정된 조례를 제정한다. 이 방안은 도서의 제적 및 폐기에 한정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제적 및 폐기에 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해지는 장점이 있다.

둘째, 기존의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도서의 제작 및 폐기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것은 가장 손쉬운 방안이다. 현재 용인시, 의왕시, 평택시, 홍천군 등이 이런 방식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셋째, 국가가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지침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모든 도서관에 적용되는 '도서관이 연간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자료의 양에 대한 지침이 도서관법시행령의 [별표 7]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 폐기도서의 처리 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한다면 개별 지자체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미희 (2003). 국내 도서관의 자료보존 및 폐기실태와 공동보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두연 (2022. 3. 11.). 무안공공도서관 “헌책 공짜로 가져가세요”. 호남교육신문, 출처:
<https://www.ihop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241>
- 김명일 (2023. 8. 21.). 1년간 버려지는 책 1000만권. 경남매일, 출처: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24757>
- 김미혜, 이상용 (2011).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2), 249-278.
- 김주영, 이진우, 박현경, 방인선 (2010). 도서관, 기본을 고민하다. 경기도서관 총서, 3.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김진환, 하태준, 김용렬, 류범중 (2010). 장서폐기 필요성과 저해요인.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0, 591-593.
- 김희환 (2015). 공공도서관 장서폐기 실태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도서관법. 법률 제19592호.
- 도서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533호.
- 도영진 (2023. 8. 24.). 경남에 공공헌책방 세워 문화자산 보존하자. 동아일보, 출처:
<https://v.daum.net/v/20230824030453558>
- 마선희 (2000). 장서폐기의 기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수진 (2004). 공공도서관의 장서폐기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과 전라북도 지역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 윤희윤 (2020). 장서관리론 (완전개정 제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이 도 (2024. 6. 26.). 동대문구 구립도서관의 폐기도서 활용방안. 동대문 이슈, 출처:
https://www.ddmissue.com/news_view.jsp?ncd=10524
- 이용민, 이지연 (2021). 대학도서관 단행본 자료의 장서폐기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8(1), 71-86. DOI: 10.3743/KOSIM.2021.38.1.071
- 이은철 (2000). 장서폐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 37(1), 3-2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조례 제5391호.
- 정연순 (2006). 공공도서관의 자료폐기 규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조윤희 (2011). 공공도서관의 장서폐기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229-24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11. 7.).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실 폐기도서를 일반시민에게
기증해도 되나요? 출처: <https://www.nec.go.kr/site/nec/law/qnaList.do>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2. 6.).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과월자료 나눔 관련질문입니다.
출처: <https://www.nec.go.kr/site/nec/law/qnaList.do>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3. 26.).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과월호 잡지 및 기증도서 무료
배부 관련. 출처: <https://www.nec.go.kr/site/nec/law/qnaList.do>
- 한국도서관협회 (202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반대 성명서. 출처:
<https://www.kla.kr/boards/3/posts/22357?menuIds=1,10>
- 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Buffalo & Erie County Public Library (n.d.). Aurora Town Public Library Discarded
Book Sale. Available: <https://buffalolib.libcal.com/event/12099270>
- McGaw, H. F. (1956). Policies and Practices in Discarding. Library Trends, 4(1), 270.
재인용: 윤희윤(2020). 장서관리론 (개정 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Portsmouth Libraries & Archive (n.d.). Public Library Service, Stock Policy. Available:
<https://librariesandarchives.portsmouth.gov.uk/public-library-service/your-library/stock-policy/>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Yoon-hee (2011).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improving method of collections disposal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229-245.

-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ies Act. No. 34533.
- Gim, Hui Whan (2015). A Study on Realities of Book Weeding in Public Libraries: Focusing on Public Libraries Under Office of Education in Gyeongsangnam-province.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Jung, Yeun-Sun (2006).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the Weeding of Materials in Public Librarie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Kang, Mi Hee (2003). A Study on the Environment of Library Materials Preservation, Weeding Practices, and the Demands of Cooperative Storage in the Korean Library.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im, Doo-Eon (2022, March 11). Puan Public Library, "Take used books for free", Honam Education Newspaper. Available:
<https://www.ihop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241>
- Kim, Jin-Hwan, Ha, Tae-Jun, Kim, Yong-Yul, & You, Beom-Jong (2010). A study on necessity of weeding library collections and hindering factors.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0, 591-593.
- Kim, Mi-Hye & Lee, Sang-Yong (201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weeding in academic library collec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2), 249-278.
- Korean Library Association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mpilation Committee (2010). The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Eun Chul (2000). A study of the methods and procedure of weeding library collections. National Assembly Library Review, 37(1), 3-24.
- Lee, Yong Min & Lee, Jee Yeon (2021). An exploratory study on discarded books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1), 71-86. DOI: 10.3743/KOSIM.2021.38.1.071
- Libraries Act. No. 19592.
- Ma, Seon Hee (2000). A Study on the Standard and Improvement Scheme of Discard Library Collection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Yoo, Su Jin (2004). A Study on Weeding Programs and Consiousness in Public Libraries. Master's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Yoon, Hee-Yoon (2020). Library Collection Management (4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